

---

**일본의 공공비축제도 운용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

---

**2008. 11.**

# 목 차

## I. 출장 개요

## II. 출장 결과

1. 일본의 쌀 산업 현황
2. 일본의 쌀 생산 및 유통정책
3. 일본의 공공비축제 현황
4. 일본의 벼 건조 및 출하 형태
5. 일본의 미곡유통제도
6. 일본의 농산물검사제도
7. 일본의 정부양곡 보관 실태
8. JAS법에 기초한 현미 및 정미의 품질표시

### <참고자료>

1. 일본의 쌀 품질표시 및 검사관련 자료
2. 출장관련 주요사진

# I. 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 공공비축제도 개선을 위해 입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정부 정책과 민간입찰회사의 입찰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09년 입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
  - 공공비축제도 정책입안 부서, 민간입찰회사의 입찰상황 및 공공비축 쌀 재배농가 현황파악에 중점 연수
-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자체,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국제 감각을 제고하여 향후 입찰제 도입시 공공비축매입을 안정적으로 운영

2. 출장지 및 출장기간 : 일본, 10.20~10.24(5일간)

3. 출장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김태훈 부연구위원

최익창 초청연구원

## 4. 주요 방문장소

- 지바현 쌀 재배농가(녹경사) 방문
- 동경 파소나 지하재배시설 방문
- 동경 후카가와 정부양곡 보관창고 방문
- 동경 토요라이스(쌀 가공판매회사) 방문
- 동경 정부간행물센터 방문
- 토요하시 대형마트 쌀매장 견학
- 오사카 쌀홍보관 방문
- 효고현 전농 필라이스 방문
- 효고현 농정환경과 방문

## II. 출장 결과

### 1. 일본의 쌀 산업 현황

#### □ 일본의 쌀 수급상황

##### ○ 쌀 재배면적과 단수

- 벼 재배면적은 1990년 207만 4천ha에서 2008년 167만ha로 18년간 19.5% 감소하였음
- 이는 이농과 같은 농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 생산조정 정책이 농가의 재배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임
- 반면 단수는 흉년이었던 1993년의 ha당 3.33톤을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기술이 진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부차적으로 토질이 좋지 않은 논이나 생산량이 저조한 논부터 생산조정(set-aside)이 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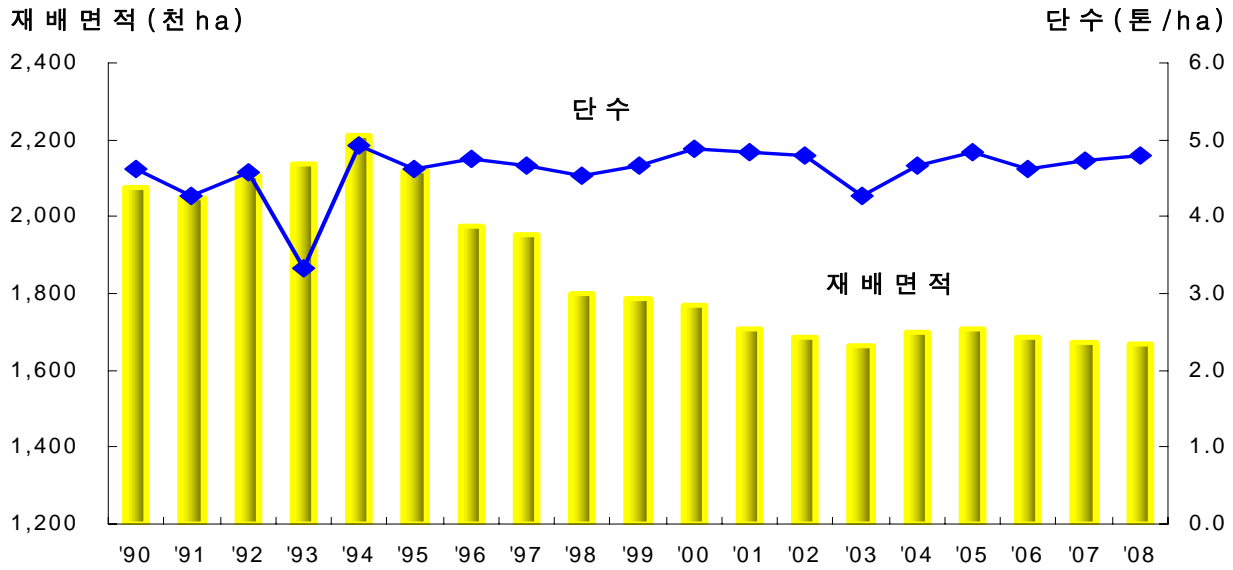
표 1. 자포니카 쌀 수급(정곡기준)

단위 : 천 톤

| 연도   | 재배면적  | 단수   | 이월재고  | 생산량    | 총수입량  | 총공급량   | 총수출량 | 총소비량   |
|------|-------|------|-------|--------|-------|--------|------|--------|
| 1990 | 2,074 | 4.61 | 992   | 9,554  | 34    | 10,563 | 0    | 10,563 |
| 1991 | 2,049 | 4.27 | 983   | 8,740  | 17    | 9,741  | 0    | 9,741  |
| 1992 | 2,106 | 4.57 | 237   | 9,621  | 229   | 9,876  | 0    | 9,876  |
| 1993 | 2,139 | 3.33 | 209   | 7,129  | 2,264 | 9,961  | 0    | 9,961  |
| 1994 | 2,212 | 4.93 | 18    | 10,903 | 139   | 10,930 | 413  | 10,930 |
| 1995 | 2,118 | 4.62 | 1,411 | 9,781  | 440   | 11,643 | 0    | 11,643 |
| 1996 | 1,977 | 4.76 | 2,675 | 9,413  | 559   | 12,588 | 30   | 12,588 |
| 1997 | 1,953 | 4.67 | 3,558 | 9,123  | 468   | 13,180 | 642  | 13,180 |
| 1998 | 1,801 | 4.53 | 3,513 | 8,154  | 633   | 12,221 | 137  | 12,221 |
| 1999 | 1,788 | 4.67 | 2,721 | 8,350  | 656   | 11,710 | 250  | 11,710 |
| 2000 | 1,770 | 4.88 | 2,084 | 8,636  | 680   | 11,399 | 501  | 11,399 |
| 2001 | 1,706 | 4.83 | 2,621 | 8,242  | 616   | 11,518 | 43   | 11,518 |
| 2002 | 1,688 | 4.79 | 2,694 | 8,089  | 654   | 11,408 | 200  | 11,408 |
| 2003 | 1,665 | 4.26 | 2,466 | 7,091  | 706   | 10,257 | 200  | 10,257 |
| 2004 | 1,701 | 4.67 | 1,700 | 7,944  | 787   | 10,419 | 200  | 10,419 |
| 2005 | 1,706 | 4.84 | 1,919 | 8,257  | 681   | 10,845 | 200  | 10,845 |
| 2006 | 1,688 | 4.61 | 2,395 | 7,786  | 700   | 10,856 | 200  | 10,856 |
| 2007 | 1,673 | 4.74 | 2,406 | 7,930  | 700   | 11,036 | 200  | 11,036 |
| 2008 | 1,670 | 4.79 | 2,686 | 8,000  | 700   | 11,386 | 200  | 11,386 |

자료 : USDA, PS&D(2008)

그림 1. 일본의 쌀 재배면적과 단수



자료 : USDA, PS&D(2008)

### ○ 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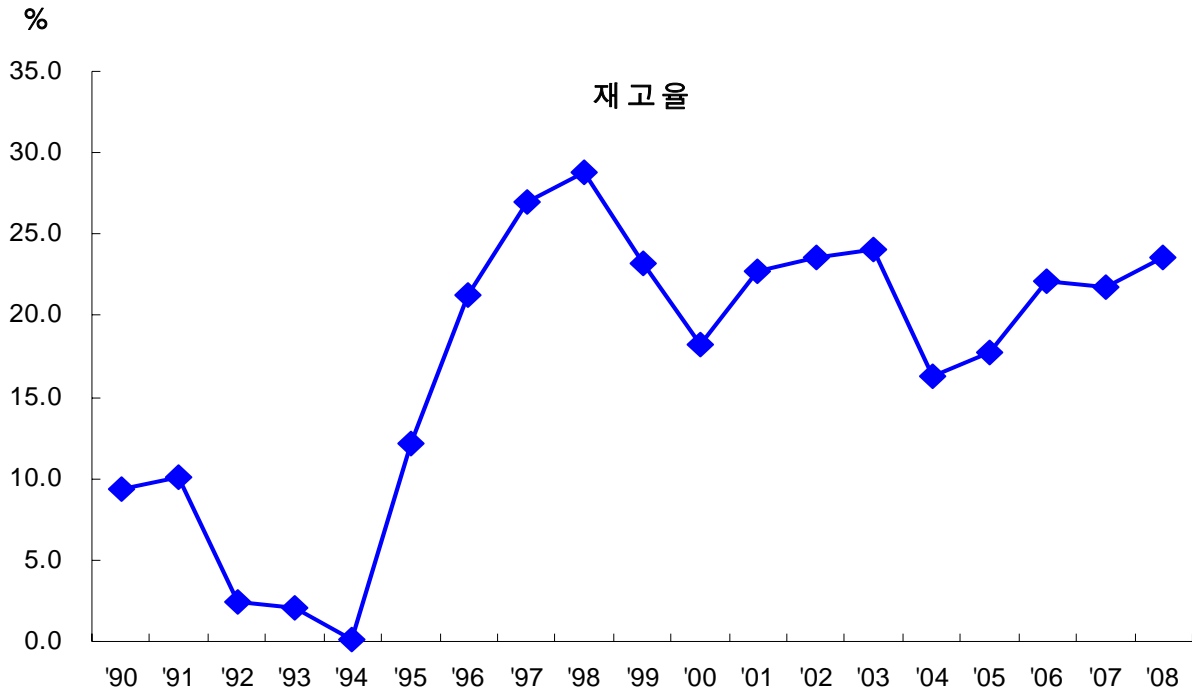
- 2008년 쌀 생산량은 800만톤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음. 이는 재배면적이 소폭 줄어든 반면에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었기 때문임
-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한 해는 1994년으로 1,090만톤을 생산하였고, 냉해가 발생한 2003년은 709만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적었음. 이들 연도의 생산량 차이는 381만톤으로 평균생산량인 903만톤의 약 42%에 달함
- 1993년은 냉해와 도열병으로 인해 작황지수가 74에 그쳐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5% 감소하여 “헤이세이(平成)의 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2003년의 생산량이 더 적었음에도 1993년의 흉작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220만여 톤의 긴급수입이 지체되어 단기적인 수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임

### ○ 쌀 재고율 추이

- 1990년대 중반부터 쌀 공급이 과잉으로 돌아선 이후 쌀의 재고관리는 쌀 농정핵심으로 여러 정책개혁의 단초가 되어왔음
- 재고량이 늘어나면 생산과 유통정책을 조정하여 적정재고량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월된 쌀은 주식용(主食用) 보급이 원칙이지만 이월된 쌀의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사료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음
- 1970~1974년 동안의 1차 과잉기에 346만톤의 쌀 재고를 사료로 처리하였고 2차 과잉기인 1981~1983년 동안 153만톤의 재고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였음

-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던 재고는 1993년의 흉작으로 인해 재고가 1994년 1만 8천톤으로 줄어들었으나 소비 감소와 풍작으로 인해 1997년에 356만톤까지 증가하였음
- 2000년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추세를 보이던 재고량은 2008년에 이르러 적정 비축수준 상한인 200만톤을 초과하여 270만톤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쌀 재고율 추이



주: 쌀 재고율은 재고를 총소비량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기간(1990~2006)의 평균 재고율은 17%임  
 자료 : USDA, PS&D(2008).

### ○ 정부 및 민간재고량 추이

- 쌀 재고는 크게 정부재고와 민간재고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정부재고는 2001년까지 총 재고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음
- 이후 정부와 민간재고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 보유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08년 정부보유 재고량은 99만톤으로 1999년 287만톤에 비해 73%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는 22만톤 증가하였음
- 정부재고는 늘어났으나 민간재고가 감소하여 2008년 총 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표 2 정부 및 민간보유 재고량 추이

단위 : 만 톤

| 연도   | 판매단계 | 출하단계 | 생산단계 | 민간보유 | 정부보유 | 총량  |
|------|------|------|------|------|------|-----|
| 1999 | 31   | 124  | 67   | 222  | 287  | 509 |
| 2000 | 22   | 125  | 65   | 212  | 276  | 488 |
| 2001 | 37   | 98   | 66   | 201  | 190  | 391 |
| 2002 | 26   | 139  | 63   | 228  | 166  | 394 |
| 2003 | 41   | 100  | 61   | 202  | 163  | 365 |
| 2004 | 69   | 87   | 57   | 213  | 60   | 273 |
| 2005 | 58   | 58   | 59   | 175  | 84   | 259 |
| 2006 | 31   | 94   | 57   | 182  | 77   | 259 |
| 2007 | 32   | 100  | 51   | 183  | 77   | 260 |
| 2008 | 31   | 82   | 49   | 162  | 99   | 261 |

주: 1) 재고량은 6월말 기준으로 맵쌀 현미 및 찹쌀 현미의 수치임

2) 각 년의 민간재고량에 있어,

① 2004년 이후, 연간 현미취급수량 500톤 이상의 업자(판매, 출하단계)의 수량임

② 2003년은 판매단계의 재고량은 舊등록도매업자 연간 현미취급수량 500톤 이상, 舊등록소매업자 1,000톤 이상의 업자의 수량임. 출하단계의 재고량은 연간 현미취급수량 500톤 이상의 업자의 수량임

③ 2002년 이전에는 추계치로 판매단계의 재고량은 도매재고량에 소매재고량(추계)을 더한 수량임. 출하단계의 재고량은 계통재고량에서 비계통 재고량(추계)를 공제한 현미 재고량임

3) 2008년 6월말 재고는 속보치임

4) 라운드 관계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

## □ 쌀 수출

### ○ 상업용 쌀

- 쌀 수출은 크게 원조용과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수출량 중 상업용 쌀의 수출은 미미한 편임
- 상업용으로 연간 400~500톤 정도의 고급미가 주로 재외 일본인을 대상으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가격은 톤당 4,000~20,000 달러 정도로 높은 편임
-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본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출증대를 위해 국내분야에서 수출관계자를 육성하고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음

표 3. 상업용 쌀의 주요 수출지역

단위 : 톤

|      | 대만  | 홍콩  | 싱가폴 | 중국  | 기타  | 계   |
|------|-----|-----|-----|-----|-----|-----|
| 2005 | 484 | 95  | 59  | 54  | 68  | 760 |
| 2006 | 403 | 122 | 81  | 122 | 82  | 810 |
| 2007 | 450 | 218 | 92  | 72  | 108 | 940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

## ○ 원조용 쌀

- 해외원조 쌀 수출은 1990년 100만 톤에서 점차 증가였는데 1994년에 비축되어 있던 멥쌀 정부미 30만 톤이 원조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산 원조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음
- 1997년에는 국산 쌀 원조총량인 22만톤 전량이 멥쌀 정부미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미가 18만톤으로 국산 쌀 원조의 75%를 차지하였음

표 4. 국내산 쌀의 원조용 수출량

단위 : 천 톤

| 연도   | 국산 쌀 총 원조량 | 멥쌀 정부미 |
|------|------------|--------|
| 1990 | 100        | 0      |
| 1991 | 100        | 0      |
| 1992 | 140        | 0      |
| 1993 | 100        | 0      |
| 1994 | 140        | 30     |
| 1995 | 640        | 530    |
| 1996 | 140        | 130    |
| 1997 | 220        | 220    |
| 1998 | 900        | 810    |
| 1999 | 240        | 180    |
| 2000 | -          | 820    |

주 : 수량은 KR 원조에 따른 각 의사결정연도 기준임. 그 외의 원조는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원조실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7)

## □ 쌀 수입

### ○ 쌀 조기관세화

- 일본은 1993년 UR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특별조치를 인정받고 그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하였음
- 수입되는 MMA 물량은 이행 첫 해에 기준연도(1986~1988년) 국내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그 후 잔여 이행 기간 동안 수입량을 매년 0.8%씩 증가시키기로 하였음
- 하지만 쌀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MMA 물량이 연간 0.8%씩 증가하는 것이 재고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자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여, 관세를 지불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기관세화를 단행하였음

## ○ 쌀 수입방식 및 수입량

- 현재 일본은 기준연도 쌀 소비의 7.2%에 해당하는 68만 2천톤(정곡기준)을 TRQ(Tariff Rate Quota)로 수입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수입되지 못한 물량은 그 다음해에 추가로 더 수입하고 있음
- 1995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수입된 쌀은 총 830만톤으로 그중 750만 톤은 시장접근물량(OMA)이며, 나머지 80만톤은 국내 쌀 수입업자와 도매업자가 연명으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수입물량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방식인 SBS(Simultaneous-Buy-Sell)로 직접 수입되었음
- TRQ 초과분(쿼터외 수입쌀)은 제한된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kg당 341엔(톤당 \$3,41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 수입수량은 미미함

## ○ 수입쌀 관리주체 및 활용

- 일본으로 수입된 MMA 쌀과 연간 200톤 수준으로 수입되는 쿼터외 수입 쌀은 일본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MMA 쌀은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가 전량 구입하여 소비되고, 국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 MMA 쌀의 재고분은 국내산 쌀과 함께 해외 원조용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에 대해서는 국내산 쌀의 재고와는 별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표 5. 1995.04~2008.03 수입쌀의 활용 내역

|                |                |  |
|----------------|----------------|--|
| 수입량<br>(865만톤) | 주식용<br>(91만톤)  | 주식용으로 공급된 MMA쌀보다 많은 양의 정부국산미를 원조용으로 활용(1996년 11월~2008년 3월 국산미 원조실적 115만톤)<br>또, 1996~1999년산 정부국산미의 일부를 국내 주식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사료용 등으로서 판매(2004년 2월~2006년 6월 판매실적 72만톤) |
|                | 가공용<br>(319만톤) | 국산미로는 대응하기 힘든 저가격의 가공용(된장, 소주, 떡 등)으로 연간20~30만톤의 고정수요가 있음.   |
|                | 원조용<br>(222만톤) | 식량원조규약에 의한 일본의 약속량은 밀가루 30만톤 상당(쌀 환산시 약 19만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                | 사료용<br>(104만톤) | 2006년 7월 이후 수입년도가 오래된 MMA쌀부터 순차판매  |
|                | 재고<br>(129만톤)  |  |

주: 1) 수입량은 2008년 3월말시점의 정부매입실적임

2) 재고 129만톤에는 사료용 비축 35만톤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년)

## □ 1인당 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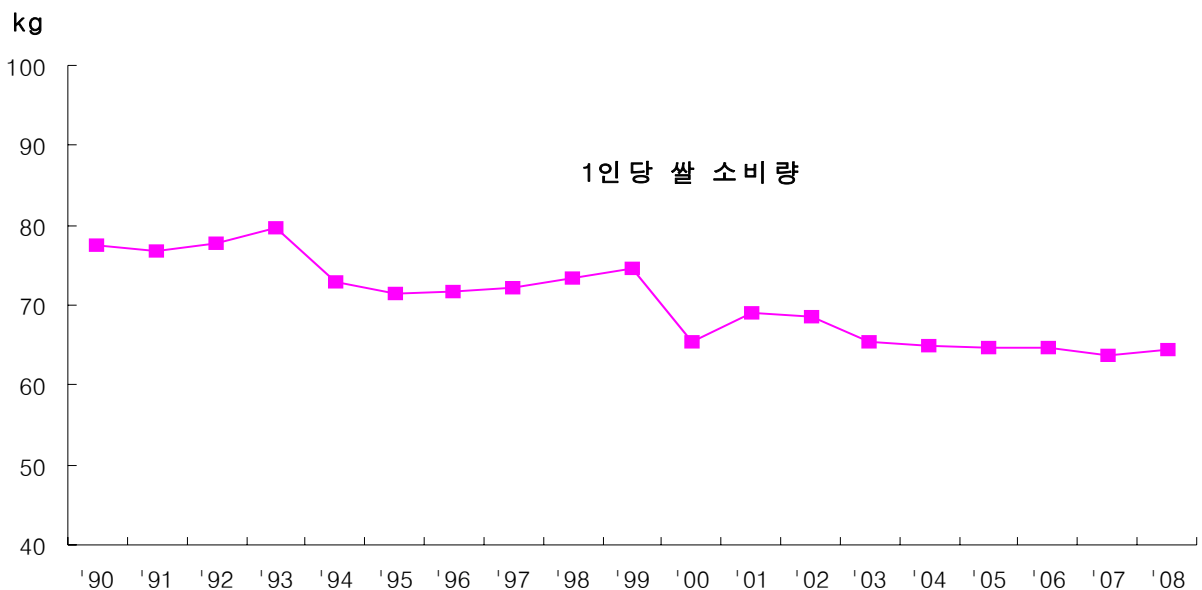
### ○ 소비량 변화

- 1인당 쌀 소비량은 1962년 118.3kg까지 증가하였으나, 소득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다양화·서구화되면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에는 64.5kg까지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감소세는 둔화되어 감소율 폭이 작아졌으며 2008년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음. 이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쌀에 대한 대체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소비촉진 정책 추진

-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식생활을 쌀밥 중심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음. 또한 식육법(食育法)을 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식품업계·농업 관계자의 연계과정을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이밖에 학교급식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업계 및 편의점과 함께 “아침밥 비즈니스”를 추진하여 밥으로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나서고 있음

그림 3.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정곡기준)



주: USDA, PS&D, IMF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 쌀 소득보전

### ○ 과거 소득보전 정책

- 1990년대 후반 가격하락으로 도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하여 과거 3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당해연도 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존해주는 쌀 농가 소득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쌀 감산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 ○ 현재 소득보전 정책

- 현재 쌀 가격에 대한 소득보전은 정부와 생산자가 기금을 조성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50%와 300엔/60kg을 합한 것을 교부하되 각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2. 일본의 쌀 생산 및 유통정책

## □ 쌀 정책의 변화

### ○ 식량관리법(1972~1995.10)

- 식량관리법은 배급제등을 기본으로 1942년 만들어졌고, 1972년 법을 현실화 하면서 2차 식량관리법 시대가 시작되었음. 비수매 자주유통미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도·소매업자가 쌀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주유통미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민간에서 쌀의 유통을 다루게 되지만 자주유통미 가격은 연간 단일 고정가격으로 유통에 앞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전가격으로 여전히 정부의 규제를 받았음
- 1986년 이후에는 자주유통미 가격과 수량결정에 관한 탄력적 조치가 도입되었고 1990년 자주유통미 가격형성센터가 창설되었음
- 또한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970년 생산조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쌀 가격정책과 공급제한정책이 결합된 체제가 나타남
- 정부수매가를 수급균형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조정제도를 실시하여 전작(轉作)을 시행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였음

표 6. 쌀 정책의 변화

|        | 식량관리법   | 식량법                       | 개정식량법                                   |
|--------|---|---------------------------|---|
| 연도     | 1972~1995.10  | 1995.11~2004.3            | 2004.4~                                 |
| 국가의 역할 | 국가가 쌀을 전량관리   | 비축미 운용으로 한정               |   |
| 유통체계   | 엄격한 유통규제  | 계획유통제도:<br>유통규제 완화        | 계획유통제도 금지                               |
| 가격형성   | 정부수매로 결정  | 자주미가격형성센터에<br>서 입찰로 가격 형성 | 쌀 가격센터에서 결정                             |
| 보완된 사항 | 비수매 자주유통미제도 도입<br>(1969년)<br>생산조정제도 도입(1970년)<br>자주유통미 가격형성센터 창설<br>(1990년) |                           |   |
| 생산조정제도 | 정부가 전작면적 배분<br>(네거티브방식)   |                           | 정부가 생산량 배분(포지티브방식)<br>지자체에서 민관합동으로 조건결정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7)

### ○ 식량법(1995.11~2004.3)

- 1995년 식량법에서 정부는 쌀의 전면관리를 포기하고 비축미 수매 이외에는 쌀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자주유통미의 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정부수매가는 자주유통미 가격을 기본으로 생산조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해 생산조정, 과잉미 대책, 가격형성 등의 제반사항을 농협이 책임지도록 하였음

### ○ 개정식량법(2004.4~현재)

- 2004년 식량법 개정에서는 DDA농업협상에 대비하여 시장개방의 진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였음
- 생산조정정책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산정책을 시행해 나갔음. 이때 생산량을 할당하는 생산조정 주체를 정부에서 생산자·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변경하였음
-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의사결정(정보제공)을 돕는 역할만 수행하고, 과잉생산된 쌀은 해당연도 식용이외의 용도로 처분하고, 미처분량은 다음 해 생산조정목표에 반영하여 생산을 줄여나가기로 하였음
- 자주유통미 가격형성센터를 미곡가격형성센터로 개칭하고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음. 정부 수매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비축미의 매입방식을 수확기 정가매입방식에서 수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 생산조정정책

### ○ 생산조정 대상면적

- 일본 쌀 생산정책의 핵심은 생산조정정책을 통한 감산이며, 조정면적은 1971년 55만ha로 시작하여 2002년에 101만 ha로 확대되었음
- 2003년부터 생산량을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2003년의 목표수량은 853만 톤으로 이를 단수를 이용한 목표면적으로 환산하면 162만ha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된 수치임
- 2007년의 목표생산량은 828만톤으로 면적 환산 156만ha이며, 2006년에는 전환된 논 중 61%는 다른 작물이 재배되었고 나머지 39%는 휴경되었음

### ○ 생산조정 시스템 변화

- 생산조정은 정부가 전작 목표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분, 지자체가 개별 농가에 할당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루어고 있음. 목표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전작 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1993년에는 기본 보상액제도를 폐지, 1996년부터 생산자의 자주적인 시행을 지원하는 공동보상 사업을 시작하였음. 이는 생산조정제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생산자가 상호 보상하여 원활한 생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이 제도에 가입하고 생산조정을 100% 달성하면 보상금을 받게 됨
- 2007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수급조정시스템은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수급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수요예측을 통해 목표수량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목표수량을 배분함.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이 쌀 농업보조금에 대해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음

### ○ 생산조정의 문제점

- 첫째,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쌀의 공급 총량만을 규제하여 산지브랜드마다 수요에 대응한 생산조정이 배제되었음. 이에 생산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산지별 판매가능량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둘째, 1999년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활성화 대책요강 이후 전작 작물로 보리·대두의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수요자의 소비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만을 늘리는 산지의 증가로 전작작물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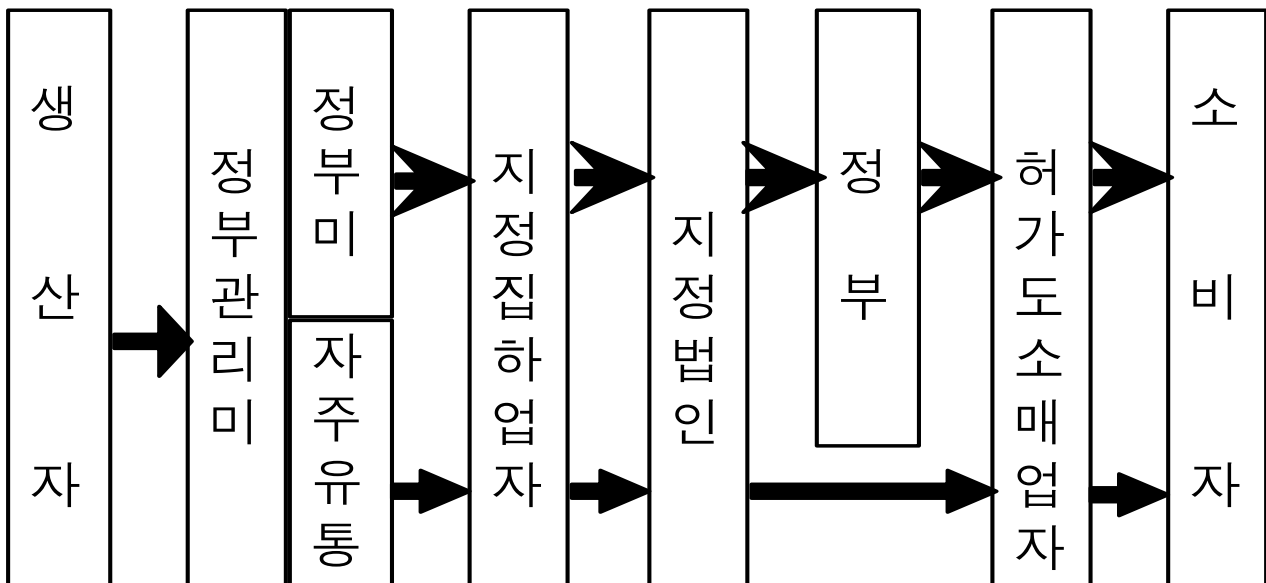
- 셋째, 생산조정이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더욱 확대되는 데에 따른 생산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음
- 넷째, 전작장려금이 지대화하고 장려금을 받기위해 지주들이 임차지를 회수하면서 논농업의 규모화화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 유통정책

### ○ 식량관리법(1972~1995.10) 하의 유통정책

- 식량관리법 하에서 정부는 쌀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 생산자는 등록된 집하업자에게 쌀을 매도, 소비자는 등록 소매업자에게 쌀을 매입하였음
- 그러나 1960년대 통제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이 상실되면서 1969년 비수매자주유통미가 도입되고, 1972년 소비자 가격을 자유화하면서 자율과 규제가 혼합된 유통체계가 나타났음
- 하지만 자주유통미 역시 공급 측에서 전농과 전집연, 수요측의 전량연, 전미상연 등의 전국단위기구가 일년에 한차례 교섭을 통하여 가격과 유통량을 결정하여 사실상 정부의 규제를 받았음
- 1990년대 들어 UR 타결을 앞두고 농업보호 삭감과 규제완화가 국제적으로 강조되자 일본의 쌀 유통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서서히 축소되고, 특히 농가의 독자 판매가 증가하였음

그림 4. 식량관리법 하에서의 쌀 유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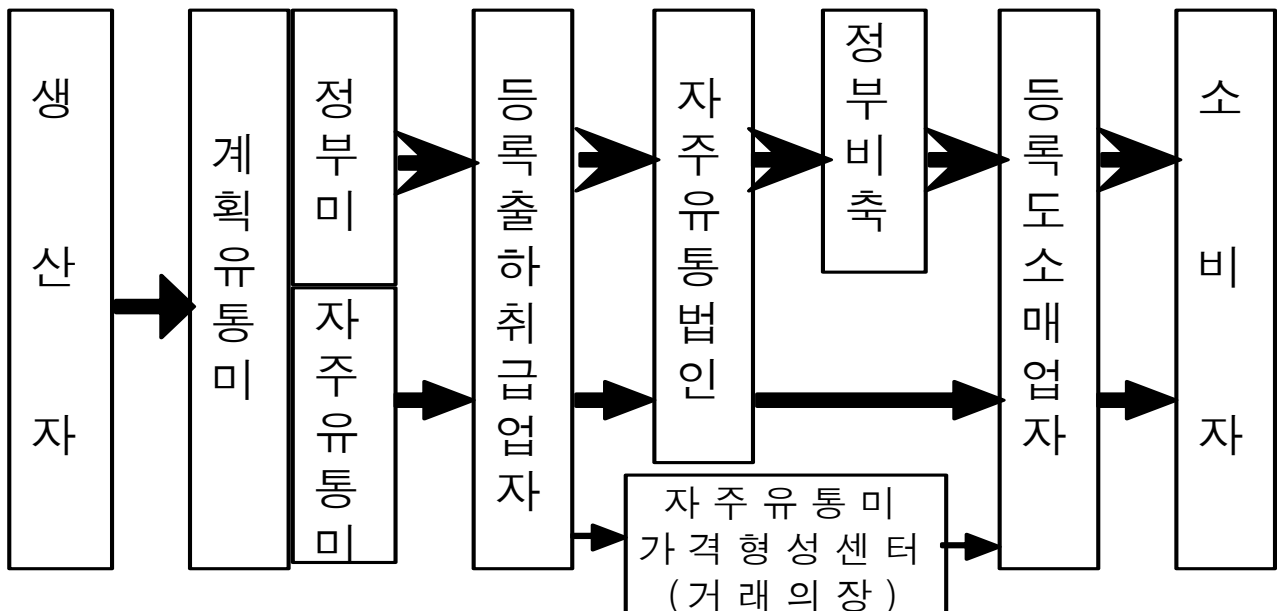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년)

### ○ 식량법(1995.11~2004.3) 하의 유통정책

- 식량법에서는 쌀의 흐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정부미와 자주유통미를 정부규제하에 두었음. 계획유통미 생산자의 판매처는 1종 출하취급업자 뿐으로 그들과 출하계약을 맺고 “주된 업자”를 선정함. 정부미는 생산자로부터 계획유통미의 일부를 수매한 비축미와 MMA 수입쌀임
- 자주유통미는 전농이 작성한 자주유통계획에 따라 집하·판매하도록 규정하고, 가격은 가격센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도쿄와 오사카에서 매월 경쟁입찰하여 결정하였음. 생산조정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계획외 유통미의 경우 특별히 확정된 경로 없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지만 자주유통미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쌀 산지 경제력이 소비지의 대형도매상과 산지지정의 형태로 사실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계획외 유통미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량법 하에서의 유통제도는 현실적으로 의미를 상실했고 제도개정이 불가피 하였음
- 2002년에는 유통구조를 개편하여 자주유통미를 폐지하고, 정부미와 민간유통미로 개편하여 거래 단계를 단축시켰음. 또한 쌀의 안정공급확보기구를 만들어 주식용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였음

그림 5. 식량법 하에서의 쌀 유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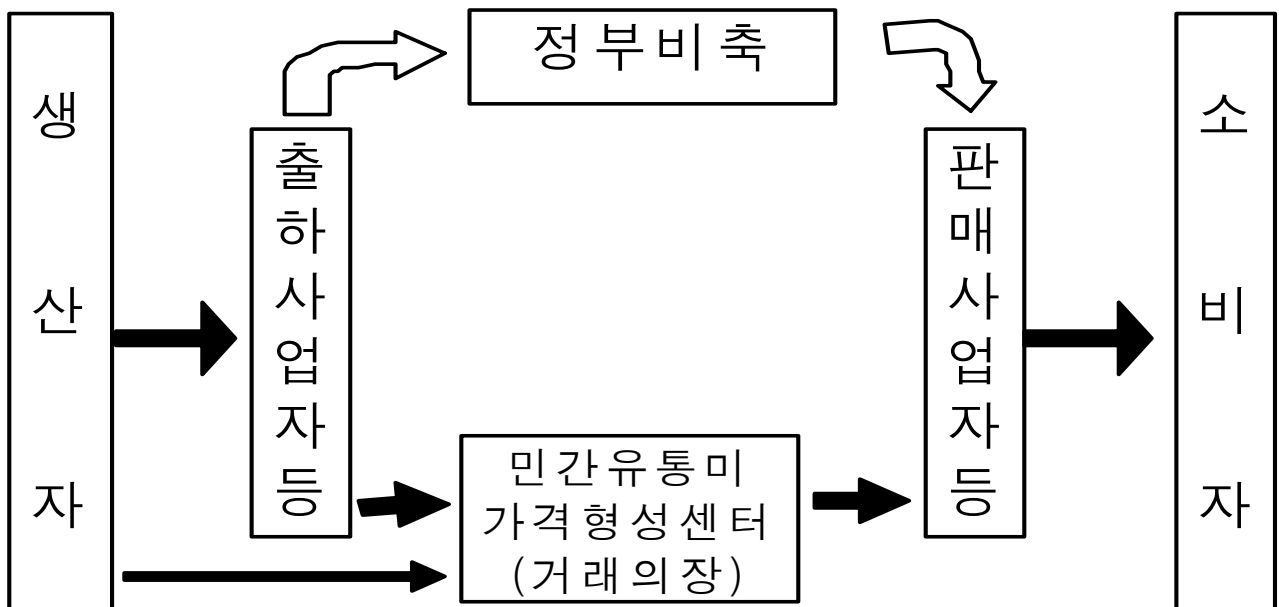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년)

### ○ 개정식량법(2004.4~현재) 하의 유통정책

- 2004년 식량법 개정에서 유통제도를 자유거래 제도로 전환하여 판매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쌀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비자는 전국의 판매사업자로 구입하거나 생산자와 직거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쌀을 쌀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
- 이에 따라 생산자는 “수요에 부합하고 잘 팔리는 쌀을 만들자” 라는 목표로 좀 더 시장지향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계획유통미와 의무상장을 없애 생산자가 산지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6. 개정된 식량법 하에서의 유통구조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년)

### 3. 일본의 공공비축제 현황

#### □ 공공비축제 도입배경

- 일본은 1993년까지 쌀의 공급과잉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흉작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그러나 1993년 작황지수가 74인 큰 흉작이 발생하여 1993년 말 재고량은 19만 4천톤으로 수요량의 2%까지 감소함.
- 이러한 흉작에 대비한 정책수단으로 1995년 식량법에서 공공비축제를 처음으로 도입함. 「미곡생산량의 감소에 의해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수량의 미곡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 비축이라고 명확히 규정함.

#### □ 비축물량

- 비축물량은 흉작이 2년 연속되어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고 작황에 따른 수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변동폭을 설정함
- 전후 작황지수가 98이하인 연도의 평균 작황지수 92와 2년 연속 흉작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준 비축물량을 150만톤으로 설정함
- 기준비축물량 외에 과거 30년 동안 작황지수의 표준편차를 고려 (1971~1992년 동안 작황지수의 표준편차는 5이며 이는 50만톤에 상당함)하여 변동폭을 부여함  
⇒ 1995년 이후 비축물량은 150만톤±50만톤임
- 하지만 1993년 이후 풍작이 계속됨에 따라 재고량이 급증하여 1998 양곡년도말 재고량이 297만톤까지 늘어남
- 재고누증으로 생산조정 대상면적을 확대하는 등 적정재고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풍작이 연속되면서 적정재고를 초과하게 됨

- 재고누증의 근본 원인은 시장가격 지지를 위해 매입량보다 판매량이 적기 때문임
- 정부재고 증가로 인해 재고미의 가치가 하락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정부비축을 미곡 생산량 감소에 의한 공급부족 사태를 대비, 필요수량의 미곡을 재고로 보유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6월말 시점의 재고량 100만톤을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기로 함

## □ 매입가격

- 매입가격은 1995년부터 사전에 결정한 가격(일종의 행정가격임)으로 매입하였으나 시장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매입가격은 생산비, 물가상승률,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text{매입가격} = \text{전년산 미곡 정부매입가격} \times (\text{자주유통미가격 변동율} \times 0.5 + \text{생산비 변동률} \times 0.5)$$

- 매입가격 결정시 자주유통미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공공비축의 취지는 살렸지만, 생산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주유통미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함

## □ 매입방식 : 입찰제

### ○ 입찰참가 자격자

- 해당연도산 국산미곡의 취급수량이 100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자
- 미곡 유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 ○ 입찰 실시시기

- 생산년의 가을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사이를 기본으로 하여 적의 실시

## ○ 매입메뉴

- 산지·품종·등급 별로 제시

## ○ 응찰방법

- 입찰참가자는 단위와 수량으로 신청
- 최저 신청수량은 100톤 이상으로 하되, 민간등록검사기관이 검사한 현미
- 예정가격을 넘는 단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격이 낮은 순서로 매입예정 수량에 도달하기까지를 낙찰자로 하는 복수낙찰제
- 입찰예정가격은 미곡가격형성센터의 취급공표가격 등을 기본으로 정부매입에 필요하지 않은 경비(운송임 등)를 공제하여 설정

## □ 방출방식

- 공공비축의 원칙에 맞게 최소한 1년 동안 보관 후 방출함
- 통상 신곡이 방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3년 정도 비축 후 방출됨
- 매월 방출물량은 균등하지 않으며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됨
- 공공비축미 방출은 경쟁입찰에 의한 방출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 자격 등은 정부가 정함

## □ 비축방식

- 기본적으로 회전비축을 실시함
- 식량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류비축(물량을 일시에 매입하고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이 합당하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회전비축(일정물량의 신곡을 매입하고 구곡을 방출하는 방식)을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입선출방식이 잘 지켜지고 있음

- 회전비축으로 인하여 고미가 되어도 현미를 저온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어 미질의 급격한 저하는 없음

## □ 일본 농림수산성 2008/2009년도의 비축운영방침

- 2008/2009년도의 비축운영은 정부비축미의 상당부분을 새로이 '05·'06,·'07년산 쌀이 차지하고, 정부비축미의 비축수량 및 민간의 유통재고수량이 안정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적절히 행한다.
- 구체적으로 2008/2009년도의 정부비축미의 매매에 대해서는 회전비축이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실제 판매수량이 계획에 미달될 것으로 예견될 경우, 계획과 판매수량과의 차이분에 대해서 그 상당 수량을 정부매입수량에서 감축한다(비축운영률).
- 비축운영률을 전제로 정부비축미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50만톤을 잠정 설정하고, 매입수량에 대해서는 판매수량의 범위내에서 50만톤을 잠정 설정한다.

## □ 현실적 제도운용

- 일본의 공공비축제는 기본적으로 상기한 틀 내에서 운용이 되고 있으나 비축미 매입은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음
  - 비축미 매입예정가격 결정은 미곡가격형성센터의 취급공표가격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미곡가격형성센터에 상장되는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기준가격으로써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비축미 매입방식은 입찰제이지만 산지별, 품종별로 필요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일본 미곡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JA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거래교섭방식에 의해 물량을 매입하고 있음
  - JA에서 보유물량, 매입가격 및 보관료 등 원가를 제시하고 정부 상대교섭방식으로 협상을 함

##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공비축제는 일본의 제도와 비슷하지만 제도 운용은 차이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당해연산의 당해 방출비율이 높음
  - 미곡유통의 경우 일본은 현미로 대부분 유통되지만, 우리나라는 조곡상태로 보관되고 유통은 백미로 되고 있음
  - 농가의 출하도 일본은 수탁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매취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운용이나 미곡유통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의 입찰제 도입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 공공비축미 매입시 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 혹은 예정가격이 있어야 하며, 일본의 경우 미곡가격형성센터의 취급 공표가격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구가 없음
- 일본의 미곡가격형성센터도 상장물량이 감소하여 기준가격으로써 대표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 금년의 정부비축 미달물량에 대한 입찰제 도입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두 가격이 형성되어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음
  - 1월에 공공비축미 정산이 끝난 후 미달물량에 대해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가들이 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1월 정산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움
  - 농가입장에서는 산지유통업체가 자신들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미달물량에 대한 매입가격 결정과 지역별 혹은 업체별 물량배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4. 일본의 벼 건조 및 출하 형태

### ○ 벼의 건조

- 생산량의 92%는 화력건조하고 나머지 8%는 자연건조를 실시하고 있음
- 화력건조 가운데 35%는 C/E 또는 R/C 등에서 공동건조를 하고 65%는 개인건조를 하고 있음
- \* 컨트리 엘리베이터(C/E) : 건조·저장·현미 가공처리 시설
- \* 라이스 콤플렉스(R/C) : 현미를 백미로 가공처리하는 시설

### ○ 출하형태

- ① 농가에서 건조·조제한 후 현미로 가공하여 단위농협 등으로 출하 : 약 70%
  - 현미로 가공하는 방법은 80%정도는 농가보유 제현기로 가공하고 20%정도는 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현
- ② 농가에서 물벼 상태로 C/E(일부 R/C)로 출하 : 약 30%

### ○ 출하물량의 정산

- 농가는 현미를 단위농협을 통하여 JA(全農)에 출하하고 1차로 미곡가격 형성센타의 3년 평균가격의 90% 정도를 우선지급금으로 받고, 나중에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수수료 등 유통비용과 우선지급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고 있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도 농가들이 수확기 일시에 농협이나 RPC 등에 판매하지 말고 자체 저장하였다가 판매하거나 수탁 판매로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5. 일본의 미곡유통제도

### □ 국내산 미곡

- 2004년 4월부터 「개정식량법」에 따라 미곡은 정부미과 민간유통미로 구분하여 유통됨으로써 판매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미곡을 취급할 수 있으며, 거래가 자유화되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었음
- 정부미의 매입은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에서 JA·全集連 등 민간등록기관이 검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미를 입찰제로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었으며, 판매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판매사업자 등에게 공매하고 있었음
- 민간유통미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생산자가 출하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판매사업자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 생산자가 직접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등 유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정부미를 직접 농가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농협이나 RPC의 시설을 이용하여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7. 개정식량법('04. 4)에 따른 일본 미곡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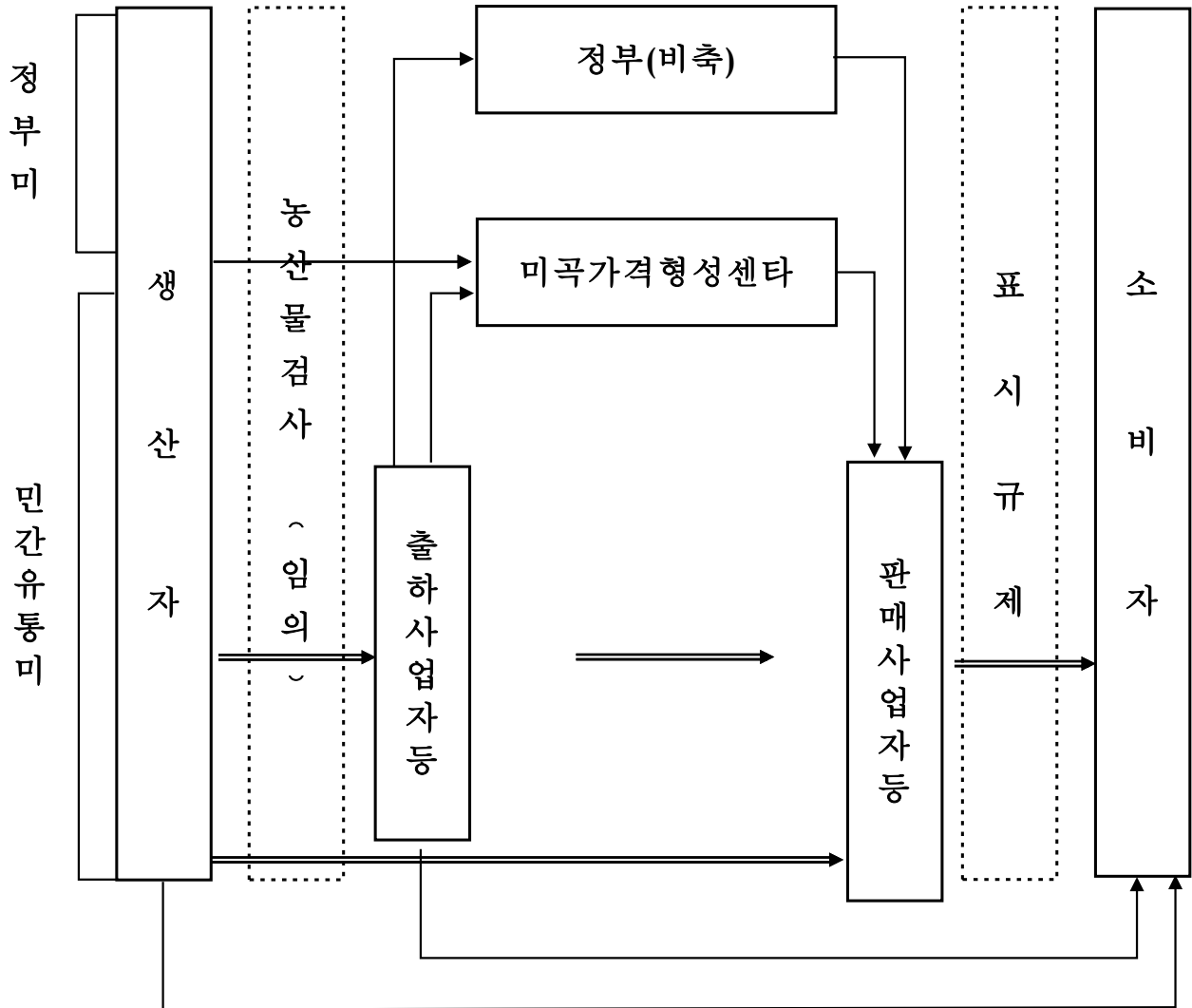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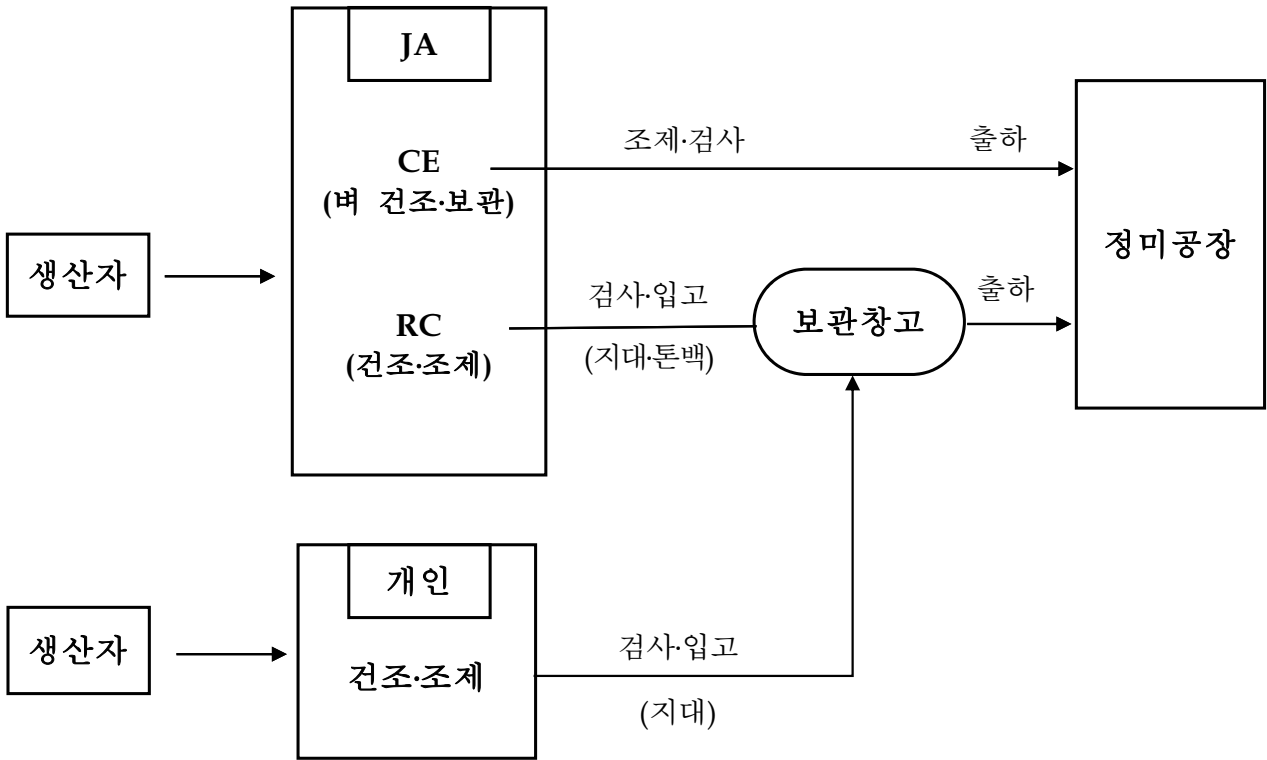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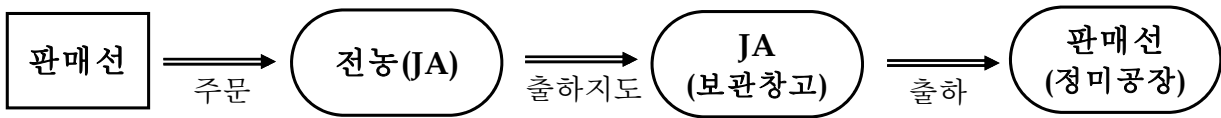


그림 8. 미곡 유통의 흐름

< 출하 >



< 판매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2008년)

## □ 수입산 미곡

-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한 후 '00년부터 매년 76.7만톤의 MA물량을 균일하게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가공용·원조용·사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MA일반입찰 67만톤, SBS방식 10만톤의 비율로 도입
- 입찰주관 :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 식량무역과

## □ MMA물량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방식(최저가격 낙찰)
- 포장bag : 30kg P.P bag
- 도입곡종 : 중·장립종, 쇠미, 멥·찹쌀, 메현미 등(찹쌀은 주로 태국, 중국산)
- 보관방법 : 저온창고 보관(평균 15℃ 이하, 습도 70~75% 유지)
- 용도 : 가공용, 원조용, 사료용으로 사용
- 사후관리
  - ① 가공용 판매 시에는 분쇄하여(원형의 10% 수준 상태) 판매
  - ② 현미상태로 일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사후관리(원료투입 등 현장확인 및 서류관리)
- 판매대상자 자격요건
  - 쌀을 직접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고, 사전에 매수신청자격 확인을 받은 자

## □ SBS물량

- 입찰방법 : 수입자·판매업체 동시 입찰 참여
- 포장bag : P.E(1kg, 5kg), Cotton(5kg), P.P(30kg) 등

○ 도입곡종

- 장·중·단립종, 쇠미, 멥·찹쌀, 메·찰현미 등 모든 곡종, 쇠미는 연간 1만톤씩 일정비율 수입

○ 용도

- ① 곡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급식용으로 판매, 일부 소비자에게 판매 (약 1%)하되, 재포장하여 판매
- ② 쇠미로 수입되는 물량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며, 대부분 미소(일본 된장), 쌀과자, 쌀소주, 쌀가루 등으로 소비되고 있음

## 6. 일본의 농산물검사제도

□ 농산물 검사법 : '51년 농산물검사법 제정, 최근 '00년 개정

□ 농산물검사 목적

- ①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
- ② 품질 개선을 조장
- ③ 농산물 소비의 합리화에 기여

□ 농산물검사 대상품목 : 10품목

- 현미, 정미, 밀, 보리, 콩, 팥, 강낭콩, 절간고구마, 메밀, 전분

□ 농산물 검사규격

○ 국내산과 외국산의 별도설정

- 품위등 검사 : 종류, 명표(산지품종등), 품위(등급), 중량, 포장방법, 포장재
- 등급 : 메현미(1등, 2등, 3등) 등 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농산물검사의 체제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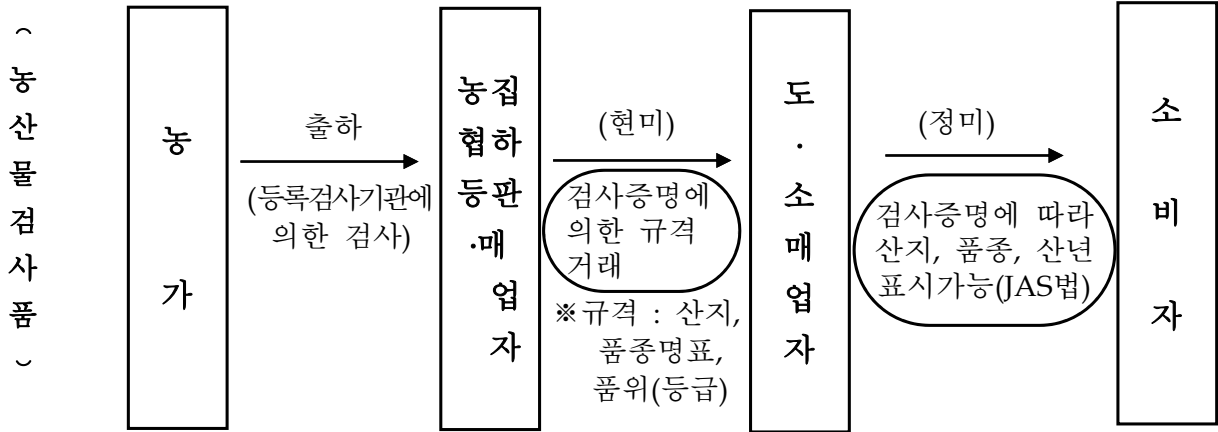
- 개정농산물검사법('01.4)에 따라 농산물검사는 의무검사에서 임의검사로 변경되어 그 동안 국가가 전담해 온 농산물검사를 '01년부터 5년 동안 민간등록검사기관과 병행·실시해 오다 '06년부터는 민간등록검사기관이 전담해 오고 있었음
- 등록방법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성에 등록신청
- 민간등록기관 수('07.3) : JA계 등 1,390개 기관, 검사원 12,884명
- 현미·정미·밀·보리·콩은 생산량의 50% 이상이 농산물검사를 받아 유통되고 있었음

※ 소비자들은 JA(全農)에서 검사한 농산물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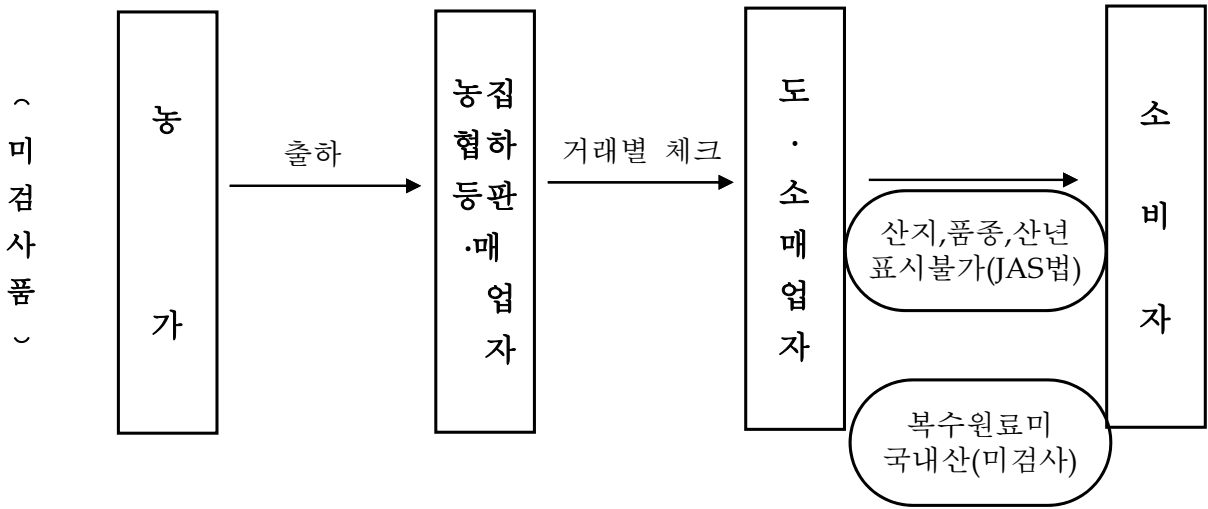
## 《시사점》

- 시중 유통 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 JA(全農) 등과 같이 민간등록검사기관을 육성하여 시중 유통 쌀 중 검사품에 한하여 품종(순도 포함)·연산·단백질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9. 개정농산물검사법('01.4)에 따른 농산물검사 개요



※ 검사 : 육안검사하여 등급 격부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년)

## 7. 일본의 정부양곡 보관 실태

- 정부비축창고는 일본 내 9개소가 있으며, 이중 2개가 도쿄에 있었고, 나머지는 JA·全集連 등 민간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었음
- 정부비축량은 100만톤 정도이며 일본 소비량의 12% 점유
- 특히 후카가와 정부비축창고는 특별재난이나 평시에 도쿄 지역의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최대 비축량은 59,532톤으로 동경도의 1개월 소비량으로 관동, 홋카이도산을 보관
- 일본산 현미는 '05~'07년산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관기간은 3~4년 주기로 회전시키고, 미국산 쌀 등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었음
- 창고내 보관온도는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5℃이하로 저온저장되며, 습도 60~70%, 현미수분 14~15%정도 유지
- 인위적인 온도조절은 4~10월까지 하며, 그 이외의 달에는 상온보관
- 출하 시에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온이 상온과 비슷하도록 템퍼링을 실시한 후 출고
- 원료현미는 대부분 30kg들이 지대포장 또는 1톤들이 톤백포장으로 전량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었음
- 저온저장미는 「低溫米」라고 고무인으로 날인되어 있었음
- 창고출입문·방충문은 해충이나 쥐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철제로 제작하여 설치해 두었음
- 창고 내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으며 해충이나 쥐의 피해품의 없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상온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축하거나 저온창고를 신축하여 정부미를 저온 보관함으로써 쌀의 품질이 수확기 때나 여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8. JAS법에 기초한 현미 및 정미의 품질표시

### □ 관련 규정

- 현미 및 정미의 품질표시 기준('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제515호)

### □ 표시기준

- 원료현미의 표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
- 산지, 품종 및 연산이 증명(국산품은 농산물검사법, 수입품은 수입국의 공적기관 등에 의한 증명)된 단일 원료를 사용한 경우
  - ⇒ 산지, 품종, 산년 및 사용비율을 기재하되, 산지는 국산품은 도도부현명, 시·군명 기타 일반에 알려진 지명을, 수입품은 원산국명 또는 원산국명 및 일반에게 알려져 있는 지명을 기재하고, 사용비율은 100%라고 기재
- 복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 ⇒ 복수원료미 등 원료현미의 산지, 품종, 산년이 동일하지 않거나 전부 혹은 일부가 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재, 산지 및 사용비율을 병기
  - ⇒ 산지, 사용비율은 국산품은 「국산품, 00%」로, 수입품은 원산국마다 「00(국명)산00%」으로, 국산품 및 원산국별 사용비율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
- 내용량 : 내용중량을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명기하여 기재
- 정미년월일
  - ⇒ 현미는 원료현미를 조제한 연월일을, 정미는 원료현미를 정백한 연월일을, 수입품으로 조제·정미년월일이 불분명한 것은 수입년월일을 기재하되, 조제년월일, 정미년월일 혹은 수입년월일이 다른 것을 혼합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조제년월일, 정미년월일 또는 수입년월일을 기재
- 판매자
  - ⇒ 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표시를 행하는 자가 정미공장인 경우는 「판매자」 대신 「정미공장」이라고 기재

### 《시사점》

- 우리나라도 검사를 받은 쌀에 한하여 품종(순도 포함)·연산·단백질함량 등을 표시하고 미검사품은 일반적인 사항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1>

## 일본의 쌀 품질표시 및 검사관련 자료

□ 일본의 쌀 품질표시

○ 현미 검사품

| 명 칭   | 정 미  |       |      |      |
|-------|--|-------|------|------|
| 원료현미  | 산 지  | 품 종   | 산 년  | 사용비율 |
|       | 효고현  | 고시히까리 | 19년산 | 100% |
| 내 용 량 | 10kg   |       |      |      |
| 정미년월일 | 평성 20년 8월 20일                                      |       |      |      |
| 판매자   | 00미곡 주식회사<br>00현 00시 00쵸0000<br>TEL 0000 (00) 0000 |       |      |      |

○ 현미 미검사품

| 명 칭   | 정 미  |     |     |      |
|-------|--|-----|-----|------|
| 원료현미  | 산 지  | 품 종 | 산 년 | 사용비율 |
|       | 복수원료미<br>국내산                                       |     |     | 100% |
| 내 용 량 | 10kg   |     |     |      |
| 정미년월일 | 평성 20년 8월 20일                                      |     |     |      |
| 판매자   | 00미곡 주식회사<br>00현 00시 00쵸0000<br>TEL 0000 (00) 0000 |     |     |      |

□ 민간 등록검사기관의 추이

| 구분 \ 연도   | '01   | '02   | '03   | '04   | '05    | '06    |
|-----------|-------|-------|-------|-------|--------|--------|
| 등록검사기관의 수 | 297   | 561   | 790   | 968   | 1,387  | 1,390  |
| 농산물검사원 수  | 1,211 | 3,479 | 6,518 | 9,597 | 12,077 | 12,884 |
| 민간검사비율(%) | 10.6  | 35.0  | 73.7  | 96.3  | 99.9   | 100    |

□ 계통별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상황('07. 3. 현재)

| 구 분        | JA계   | 전집연계  | 도·소매 | 제3자 기관 | 기타  | 계      |
|------------|-------|-------|------|--------|-----|--------|
| 기관 수       | 582   | 44    | 366  | 35     | 363 | 1,390  |
| 검사원 수      | 9,478 | 1,447 | 730  | 320    | 909 | 12,884 |
| 검사원수 비율(%) | 74    | 11    | 6    | 2      | 7   | 100    |

□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요건

- 농산물검사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주요 농산물의 검사상황('06년산)

| 구 분    | 미곡    | 밀·보리  | 콩   | 팥  | 메밀 |
|--------|-------|-------|-----|----|----|
| 생산량    | 8,556 | 1,012 | 229 | 64 | 33 |
| 검사수량   | 5,086 | 1,049 | 175 | 21 | 5  |
| 수검율(%) | 59    | 104   | 76  | 33 | 14 |

□ 농산물검사 관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 구 분             | '01년까지 | '02년도 | '03년도 | '04년도 | '05년도 | '06년도 | 계  |
|-----------------|--------|-------|-------|-------|-------|-------|----|
| 행정처분<br>(개선명령등) | -      | 1     | -     | 2     | -     | -     | 3  |
| 행정지도<br>(공표분)   | -      | 1     | 30    | 12    | 8     | 6     | 57 |
| 형사고발            | 5      | -     | 2     | 1     | 1     | -     | 9  |

□ 주요 국내산농산물 검사규격

○ 논벼 메 현미

| 항목<br>등급 | 최 저 한 도   |           | 최 고 한 도   |          |           |            |      |     |               |           |
|----------|-----------|-----------|-----------|----------|-----------|------------|------|-----|---------------|-----------|
|          | 정립<br>(%) | 형질<br>(%) | 수분<br>(%) | 계<br>(%) | 사미<br>(%) | 착색립<br>(%) | 이종곡립 |     |               | 이물<br>(%) |
|          |           |           |           |          |           |            | 벼    | 보리  | 벼,보리제<br>외한 것 |           |
| 1 등      | 70        | 1등표준품     | 15.0      | 15       | 7         | 0.1        | 0.3  | 0.1 | 0.3           | 0.2       |
| 2 등      | 60        | 2등표준품     | 15.0      | 20       | 10        | 0.3        | 0.5  | 0.3 | 0.5           | 0.4       |
| 3 등      | 45        | 3등표준품     | 15.0      | 30       | 20        | 0.7        | 1.0  | 0.7 | 1.0           | 0.6       |

○ 보통 밀

| 항목<br>등급   | 최 저 한 도          |                                     |   | 최 고 한 도   |             |             |     |     |     |
|------------|------------------|-------------------------------------|---|-----------|-------------|-------------|-----|-----|-----|
|            | 용적중              | 정립<br>(%)                           | 형질<br>(%)                                 | 수분<br>(%) | 피해립·이종곡립·이물 |             |     |     |     |
|            |                  |                                     |   |           | 계<br>(%)    | 이종곡립<br>(%) | 이물  |     |     |
| 맥각립<br>(%) | 비린<br>부기병<br>(%) | 감<br>부기<br>병<br>제외<br>한<br>것<br>(%) | 맥각병·비<br>린감부기<br>병<br>제외<br>한<br>것<br>(%) |           |             |             |     |     |     |
| 1 등        | 780              | 75                                  | 1등표준품                                     | 12.5      | 5.0         | 0.5         | 0.0 | 0.1 | 0.4 |
| 2 등        | 730              | 60                                  | 2등표준품                                     | 12.5      | 15.0        | 1.0         | 0.0 | 0.1 | 0.6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2008)

<참고자료 2>

## 출장관련 주요사진

### □ 친환경쌀 생산농가

< 친환경 재생지 >



< 가공시설 및 보관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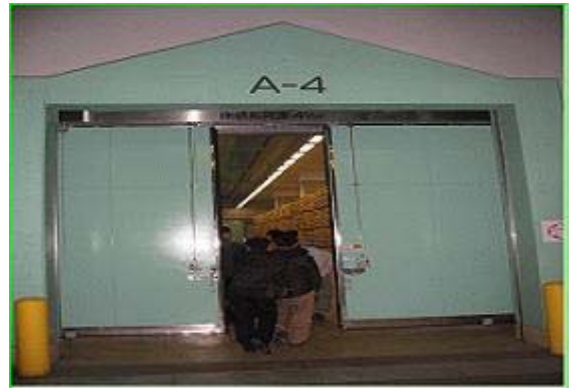


### □ 정부보관창고

< 창고 출입문 >



< 쥐막이판 >



< 창고 내부 >



< 비상 전력 발전기 >



< 정부양곡의 톤백 보관 >



< 정부양곡의 포대(30kg) 보관 >



< 미국산 쌀 P.P대(30kg) 보관 >



< 보관된 정부양곡(30kg) 품질표시 >



< 보관된 정부양곡(톤백) 품질표시 >



□ 쌀소비 홍보

〈 쌀 요리법 〉



〈 쌀에 대한 상식 책자 〉



〈 쌀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상품들 〉



□ 정미공장

< 효고 펄 라이스 정미공장 >



< 로봇을 이용한 자동시설 >



< 효고 펄 라이스 쌀 제품들 >



□ 쌀포장 및 품질 표기

< 가공용 쌀 표시(품종 미표시) >



< 가공용 쌀 표시(품종 미표시) >



〈 쌀 품질표시 ① 〉



〈 쌀 품질표시 ② 〉



〈 쌀 품질표시 ③ 〉



〈 쌀 품질표시 ④ 〉

